

(시행령 제18조),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신청시 필요기재사항과 전자우편이용 신청(시행령 제19조), 시정권고 소위원회의 구성(시행령 제17조), 세부사항에 관한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제정 위임(시행령 제20조)만이 정해져 있다.

시정권고 제도의 당부는 본질론적 허용성 유무, 실제적 이익의 유무, 입법방식의 적법타당성 유무(법률유보, 행정법규위임의 한계 문제) 등에 의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언론피해 조정·중재 제도는 언론기능의 정상화, 언론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나아가 화합적 건설적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도모하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이유는 지난 25년간의 경험과 실적을 근거로 살펴 볼 때 충분히 살려졌다고 평가한다. 다만 그 역할을 더욱 크게 하고 국가사회의 유익한 제도로서의 존재감을 더욱 높이기 위한 성찰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라 사료한다.

위원회는 공익·사익과 사회가치를 수호하는 시대 양식의 대변자라는 책무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거나 그 취지구현에 미흡한 부분의 조속한 개선, 언론중재위원회의 법적 지위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심판과 훈육이 아닌 조정과 화해를 추구하는 공공서비스기관이라는 자기정체성인식을 더욱 새로이 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심판이 아니라 화해교섭의 전문가로서 더욱 진지한 사명감과 열린 지성으로서 직무에 임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 중재부의 조정업무 공간도 상호이해와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의 장이므로, 그 분위기를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